

1. 의결주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(안 제69조 [별표 2])

- 1) 시행령 [별표 2]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이 “위반행위가 있는 날”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에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, 간헐적으로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.
- 2)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을 “행위가 있는 날”에서 “적발된 날”로 개정.
- 3)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줄어들고,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19. ~ 9. 28.)

3) 행정규제 :

대통령령 제 호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중 “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”을 “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”으로, “부과처분”을 “과태료 부과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2]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<u>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</u>	[별표 2] 1. 일반기준 가. ----- <u>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-----</u> -----<u>과태료 부과처분을-----</u> -----. <u>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406